

제 목	국 문	설명의무위반과 관련된 판례분석		
	영 문	Analysis on the neglect of obligatory explanation and related mal-practice dispute		
저 자 및 소 속	국 문	*김기경, **신현호, ***손명세, ***김한중 *연세대 보건정책 및 관리연구소, **연세대 대학원 보건학과, ***연세대 예방의학교실		
	영 문	*Kikyong Kim, **Hyunho Shin, ***Myongsei Sohn, ***Han Joong Kim *Institute of Health Services Research, Yonsei Univ., ***Dept. of Prev. Med. & Public Health, College of Med., Yonsei Univ.,		
분 야	보건정책	발 표 자	김기경	
발표 형식	구연	발표 시간	15분	
진행 상황	연구완료 ( ), 연구중 ( * ) → 완료 예정 시기 : 96 년 10 월			
<p>1. 연구 목적</p> <p>의료행위에 대한 환자의 권리의식 향상은 이에대한 법적구속의 증가를 가져왔고 이중 의사의 설명의무책임이 1978.8.14 우리나라 대법원판례에서 인정되기에 이르렀다. 본연구는 오늘날까지 설명의무와 관련된 판례(하급,상급심)에서 설명의무책임범위와 설명의무범위에 관한 내용을 분석하고 관련된 이론을 살펴봄으로서 설명의무위반의 구체적 기준을 제시하고 설명행위기준의 마련에 이론적 틀을 제공하기 위함이다.</p> <p>2. 연구 방법</p> <p>본 연구는 1980년부터 1996년까지의 판례중 설명의무위반과 관련된 판례를 수집하여 이를 하급심, 상급심별로, 판시된 내용의 주요 논점별로 정리, 분석하여 체계화하고자 한다.</p> <p>3. 연구결과</p> <p>우리나라는 영미법과 달리 불법행위법적 구성에 속해 환자의 승낙을 치료의 위법성조각사유로 보는 견해가 하급심에 영향을 주었으나 대법원 판례에서는 이를 인용한 사례가 없고 초기 대법원 판례는 설명의무를 주의의무와 동일시하여 전손해를 인정하다가 최근에는 설명의무위반을 인격권 즉 자기결정권의 침해로 보아 원칙적으로 정신적손해만을 구할수 있고 특별한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 재산적 손해를 청구할수 있도록 하고 있다.</p> <p>한 대법원 판결(93다60953)을 보면 “상당인과관계외에 설명의무위반이 의사의 주의의무위반과 동일시할 정도의 것이어야 한다”고 판시하여 배상범위의 확대에 엄격한 요건을 요구하려고 하지만 이에 이론상의 문제점이 제시되고있어 아직 정립된 기준으로 보기에 어려운 점이 있다.</p> <p>설명the무범위에 관하여 환자기준론과 의사기준론이 판례에서 서로 병존하고있으</p>				

며 일관성있는 법적용을 위해 의견의 일치가 필요하다. 특히 편책사유로 인정된 사례와 과실상계가 인정된 사례가 있었으나 법리상의 모순 및 한계에 대한 비판이 있어 이에대한 고려가 있어야 할것같다.

#### 4. 고찰

설명의무위반에 따른 책임범위에 대한 판례의 견해가 일치하지 않고 변화되어온 점과 설명의무범위에 대한 판례상의 태도가 혼재되어 있는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설명의무에 대한 법리가 아직 정립 및 일반화 되지못한 것을 알 수 있다.

앞으로 판례와 이론의 축적을 통한 이론과 올바른 판단기준의 정립이 의사의 설명의무에 대한 행위기준마련 및 법적보호를 위해 시급히 필요하다고 판단된다.